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2.12.28]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1호,
2012.12.28, 일부개정]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해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 및 금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평균가격 조사방법, 수입량 및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과 협정의 이행으로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폐업지원금 산출의 기준이 되는 순수익액의 산출방법 등과 관련해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농수산물의 평균가격 조사 방법 다양화(별표 1)
 - 1) 농산물의 평균가격 조사에 있어 가락시장에 한정된 평균가격 조사 장소를 가락시장 이외

의 도매시장, 공판장 등으로 확대

- 2) 이 규칙에 규정된 조사 방법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이행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한 가격을 평균가격으로 하도록 근거 마련

- 나. 농산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산출 방법 다양화(별표 2)

이 규칙에 규정된 산출 방법으로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농어업인등 이행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사용하도록 근거 마련

- 다. 농축산물의 순수익액 산출 방법 다양화(별표 3)
농산물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또는 축산물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산출 시 해당 연도의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경우 이를 산출 기준에서 제외하고, 이 경우 최근 10년간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이행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금액을 사용하도록 근거 마련

〈농림수산식품부 제공〉

【제 · 개정문】

◎농림수산식품부령 제301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12월 2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12.28>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 가격 조사방법과 총수입량의 산출방법 등
(제3조제1항 관련)

1. 평균가격 : 지원대상품목별 해당 연도 평균가격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조사한다.

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가락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 이 경우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은 가락시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시장관리자가 집계한 품목별 거래금액 및 거래물량으로 한다.
- 2) 가락시장에서 판매되지 않거나, 거래규모가 적

어 가락시장에서 산출된 단위중량당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의 경우 품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지정한 별도의 도매시장, 공판장 등에서 거래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연간 거래금액을 연간 거래물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가격으로 한다.

나. 축산업 : 「축산법」 제36조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농수축산물 유통정보에 대해 수집한 농가수취가격(農家受取價格)의 연간 평균값. 농가수취가격이 산출되지 않는 품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발표하는 축산물가격과 수요·공급 자료상의 산지가격(產地價格)의 연간 평균값을 말한다.

다. 어업등 :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월 조사·발표하는 어업생산의 동향(이하 “어업생산동향조사”라 한다)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생산금액을 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중량당 평균가격으로 한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으로 평균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평균가격으로 한다.

2. 총수입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수입되는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량의 연간 총계. 이 경우 수입량은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에 따라 집계된 품목별 수입량을 의미하며, 무역통계에 따라 수입량이 집계된 품목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동일 여부의 판단은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

» 축산법령

4.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관세법」 제322조 및 「통계법」 등에 따른 무역통계에 따라 집계된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품목별 수입량. 이 경우 무역통계에 따라 수입량이 집계된 품목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동일 여부의 판단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연간 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계산한 양. 이 경우 수입피해발동계수는 시장점유율(수입량 ÷ (국내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에 따라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 1)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작물의 생산(이하 “농작물생산조사”라 한다)에 따른 해당 품목의 생산량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단위면적당 생산량
- 2) 농작물생산조사의 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산물의 소득(이하 “농산물소득조사”라 한다)에 따른 단위면적당 생산량
- 3) 농작물생산조사 또는 농산물소득조사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로서 1) 및 2)의 기준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구할 수 없는 품목의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한다.

2. 어업등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발표하는 어업생산동향조사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으로 산출하되,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어업(업종)별·어종별 어선 톤당 또는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등의 산출방법**
(제3조제2항 관련)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 가.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별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標準栽植株數)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이 경우 단위면적당 표준재식주수는 농촌진흥청장의 현지 또는 서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한다.
- 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생산량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생산량

- 가.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 : 어선 톤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 나. 양식어업 :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 × 신청인이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어업시설의 면적 중 실제 양식에 이용된 것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면적
- 다. 어업생산동향조사 대상 품목이 아닌 경우로서 가목 또는 나목의 기준으로 생산량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생산량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2012.12.28>

인 연도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철거·폐기 면적 등의 산출방법
(제4조 관련)

1.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가. 철거·폐기 면적: 폐업지원금 지급대상품목별 표준재식주수(標準栽植株數) 등의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생산에 이용된 면적 중 철거·폐기한 면적. 이 경우 단위 면적당 표준재식주수는 농촌진흥청장의 현지 또는 서면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1)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없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순수익액. 이 경우 연도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가)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축산물의 생산비(이하 “농·축산물생산비조사”라 한다)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토지용역비와 자본용역비를 뺀 금액

나) 농·축산물생산비조사의 조사대상이 아닌 품목의 경우에는 농산물소득조사에 따른 단위면적당 소득에서 자가노력비 및 임차료를 뺀 금액

2)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있는 경우: 직전 10년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을 기준으로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이 경우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

구분	연간 순수익액
① 직전 10년간 5개 이상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근 5개 연도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개의 평균
② 직전 10년간 4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2개의 평균
③ 직전 10년간 3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3개의 평균
④ 직전 10년간 2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2개의 평균
⑤ 직전 10년간 1개의 연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단위면적당 순수익액

3) 농·축산물생산비조사 또는 농산물소득조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산출한 값을 단위면적당 순수익액으로 사용한다.

2. 축산업

가. 출하 마릿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실제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축종별 회전율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출하 마릿수

나.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

1)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마리당 순수익액이 0 또는 음의 값인 연도가 없는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마리당 순수익액. 이 경우 마리당 순수익액은 다음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

가) 사육규모별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른 마리당 조수입(粗收入)에서 일반비, 자가노력비, 고정자본이자, 유동자본이자 및 토지자본 이자를 뺀 금액

2) 해당 연도 직전 5년 중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